「수입쇠고기 취급요령」 개정

수입쇠고기취급요령

농림부고시제1999-67호
축산법 제2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쇠고기 취급요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9년 10월 1일
농림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질서 확립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입쇠고기 취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쇠고기"라 함은 HSK분류표상 0201, 0202의 신선·냉장 또는 냉동된 쇠고기를 말한다.
2. "수급조절용"이라 함은 쇠고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축산물 유통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 수입한 쇠고기를 말한다.
3. "SBS용"이라 함은 "업계간 자율거래제도(이하 "SBS제도"라 한다)"에 의하여 슈퍼그룹이 수입한 쇠고기를 말한다.

제2장 수급조절용

제3조(적용범위)

본 장은 쇠고기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하여 사업단이 수입한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물도매시장 및 축산물공판장을 말한다.
2. "공매"라 함은 도매시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광역시 및 도에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축협중앙회"라 한다) 도지회 또는 사업소(이하 "공매사무소"라 한다)를 통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3. "매매참가인"이라 함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자를 말한다.
4.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이하 "전문판매점"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9조에 의한 수입쇠고기전문판매점으로 신고를 필한 업소를 말한다.
5. "포장육"이라 함은 "축산물가공처리법제4조제2항"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농림부고시)"의 규정에 의거 소비자에게 직접판매를 목적으로 포장된 수입쇠고기를 말한다.

제5조(판매원칙)

① 사업단 사장은 도매시장이 개설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수입쇠고기를 도매시장에 상장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사업단 사장은 도매시장이 개설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입쇠고기를 공매사무소를 통하여 공매방식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 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쇠고기를 포장육으로 가공판매하거나 군납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 사장은 필요한 경우에 농림부장관이 승인을 득한 후 직배 등 판매방법을 달리 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6조(방출)

① 사업단 사장은 농림부장관의 연간 수입계획물량 범위내에서 월별 수입 및 판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축협중앙회장은 사업단 사장의 월별 판매계획에 따라 지역별, 판매처별 판매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매방법)

① 도매시장에 상장하는 수입쇠고기는 개체별로 현물을 현시하지 아니하고 경매("서면입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 도매시장이 2개소 이상 있는 지역에서는 2개 이상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동시에 상장 경매를 할 수 있다.

제8조(낙찰자 결정) 제7조에 따른 경매를 함에 있어서 낙찰자는 축협중앙회장이 결정하며, 그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축협중앙회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전문판매점 신고 등)

① 전문판매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에 의한 식육판매업 신고를 필하고 다음 각항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전문판매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식육판매업소로 신고되어 있지 않는 자가 전문판매점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육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전문판매점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2항의 신고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식육판매업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전문판매점 신고서가 동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식육판매업신고필증과 전문판매점신고증을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전문판매점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대규모 점포(백화점, 할인점 등) 및 규모화된 슈퍼마켓 등의 전문판매점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쇠고기 판매장을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⑥ 전문판매점은 소비자가 국내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식

육점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간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매매참가인)

① 중도매인 외에 도매시장에 상장된 수입쇠고기의 거래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도매시장 관리사무소(공매사무소 포함)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매참가인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또는 공매사무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의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판매가격)

① 사업단 사장은 수입쇠고기의 도매시장 최저예시 가격, 포장 원료육 및 군납육 가격 등 수급조절용 수입쇠고기의 공급 및 판매가격을 정한다.

② 서울을 제외한 지방 도매시장과 공매사무소에서 낙찰자를 결정할 때 실제로 적용할 낙찰 하한가격은 축협중앙회장이 사업단 사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하는 낙찰 하한가격은 제1항의 최저예시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제12조(인수도) 수입쇠고기 인수도는 축협중앙회의 보관창고 문전상차도로 한다.

제13조(판매대금) 수입쇠고기는 현금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 사장이 외상판매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 채권확보 조치를 취한 후 외상판매를 할 수 있다.

제14조(원산지표시 등)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자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및 대외무역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농림부고시)"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등의 표시에 관한 기준(농림부고시)"의 표시관련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금지사항) 수입쇠고기를 취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의 경매시 담합행위, 낙찰된 물량 인수 거부 및 지연행위
2. 수입쇠고기를 전문판매점 이외의 일반식육판매점에 공급하는 행위
3. 전문판매점의 국내산 쇠고기 판매행위

제16조(지도·감독)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수입쇠고기를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수입쇠고기와 관련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장부비치) 도매시장, 중도매인 또는 매매참가인은 수입쇠고기 공급관련 장부를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제3장 SBS용

제18조(적용범위) 본 장은 SBS제도에 의하여 수입하는 쇠고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9조(정의) 본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SBS제도"라 함은 슈퍼그

룹,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이 외국의 쇠고기 수출업자와 직접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슈퍼그룹(Super-group)"이라 함은 SBS제도하에서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을 위하여 쇠고기를 수입할 수 있는 다음의 자를 말한다.

① 자기자신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 (주)축협유통(이하 "축협유통"이라 한다)

② 자기자신 또는 고객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 축협중앙회, 한국냉장(주)(이하 "한국냉장"이라 한다)

③ 전문판매점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 (사)한국수퍼체인협회(이하 "코스카"라 한다), (사)축산기업중앙회(이하 "축기중앙회"라 한다), (주)우주특수산업(이하 "우주산업"이라 한다), (주)한국수입육전문유통(이하 "수입육유통"이라 한다)

④ 음식점을 위하여 수입하는 자: (주)한국관광용품센타(이하 "용품센타"라 한다), (주)농축산물공급센타(이하 "공급센타"라 한다)

⑤ 육가공업체를 위하여 수입하는 자: (사)한국육가공협회(이하 "육가공협회"라 한다), (사)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이하 "위생처리협회"라 한다), 한국육가공협동조합(이하 "육가공조합"이라 한다)

3. "고객(Customer)"이라 함은 제2호 ②의 슈퍼그룹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4. "최종수요자(End-user)"라 함은 제2호 ③~⑤의 슈퍼그룹으로부터 수입쇠고기를 공급받는 자를 말한다.

5. "슈퍼마켓"이라 함은 식품과 음료의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소매점포를 말한다.

6. "관광호텔, 관광식당"이라 함은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4-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 관광식당 등을 말한다.

7. "대규모 점포"라 함은 총 매장면적이 3,000㎡ 이상으로서 소유자가 그 총 매장면적의 30%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8. "차액금(Mark-up)"이라 함은 제2호의 슈퍼그룹이 쇠고기 수입승인을 받기 전에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제20조(최종수요자 등의 범위) ① 슈퍼그룹별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은 다음 각호와 같으며,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은 다른 슈퍼그룹에 중복소속되어서는 아니된다.

1. 축협중앙회, 한국냉장 및 축협유통: 전문판매점과 음식점 등 실수요자
2. 코스카: 코스카 회원사 중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전문판매점. 다만, 대규모 점포라 하더라도 슈퍼마켓으로 운영되는 점포의 전문판매점은 포함.
3. 축기중앙회, 우주산업, 수입육유통: 전문판매점
4. 용품센타: 대외무역 관리규정 제4-4-4조 제1항에 의한 관광호텔, 관광식당 등
5. 공급센타: (사)한국음식업중앙회 회원
6. 육가공협회: 육가공협회 회원
7. 위생처리협회: 위생처리협회 회원 중 육가공공장을

보유한 회원

8. 육가공조합: 육가공조합 조합원

② 슈퍼그룹은 소속 최종수요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등 최종수요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용도제한) 슈퍼그룹별 최종수요자 및 고객은 수입쇠고기를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 판매, 가공 등을 하여야 한다.

1. 전문판매점:판매용으로 사용
2. 음식점:자가조리용으로 사용
3. 육가공공장:육가공 원료로 사용

제22조(물량배정·배분 등)

① 사업단사장은 매회계년도 개시전에 한국과 미국간의 쇠고기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각서(ROU)상의 쿼터물량 범위내에서 각 슈퍼그룹의 구매 및 판매실적 등을 감안하여 각 슈퍼그룹별로 연간 수입물량을 배정하고 이를 각 슈퍼그룹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각 슈퍼그룹은 제1항에 의거 사업단 사장으로부터 배정받은 물량을 매회계연도 개시전에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별로 분기별 구매 및 판매계획을 수립(축협중앙회, 한국냉장, 축협유통은 자체분을 포함한다)하고 당해년도 1월 15일까지 사업단 사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슈퍼그룹은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의 참여 등 합리적인 절차와 실제적인 필요물량을 감안하는 등 공정한 배분기준으로 제2항의 배정물량을 정하여야 한다.

④ 슈퍼그룹은 제2항에 의한 분기별 구매물량 범위내에서 구매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배분된 물량이 해당 분기에 구매되지 않았을 경우 각 슈퍼그룹은 분기 익월 5일까지 잔량을 회수하여 다음 분기에 소속 최종수요자에게 재배분하여야 한다.

⑤ 슈퍼그룹은 당해년도 말까지 수입(통관)할 수 없는 물량을 파악하여 10월 5일까지 사업단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 사장은 통보된 물량을 다른 슈퍼그룹에게 재배정하여야 한다.

⑥ 슈퍼그룹은 물량을 배분한 후 최종수요자 등의 상업적 거래 등에 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수입 등)

① 최종수요자는 분기별로 배분된 물량의 범위내에서 수입할 쇠고기의 품목·가격·인도조건, 기타 판매조건 등에 관하여 수출업자와 상담 및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소속 슈퍼그룹 명의로 수입하여야 한다.

② 슈퍼그룹은 최종수요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출업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할 수 있다.

③ 슈퍼그룹은 구매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쇠고기 수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슈퍼그룹이 쇠고기를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할 때에는 쇠고기의 겉 포장에 슈퍼그룹명, 최종수요자(고객)명 등 주요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슈퍼그룹은 수입물량 배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와 비용을 최종수요자나 고객에게 부과할 수 있으나 이윤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단 사장,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이 비용

명세의 제시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견본의 수입) 슈퍼그룹은 최소물량의 견본을 수입할 수 있으며 견본으로 수입된 물량은 배정물량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25조(차액금 납입) SBS제도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자는 "양허관세 추천축산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 납입요령"(농림부 고시)의 규정에 의한 일정액의 차액금을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용품센타가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재배정된 물량을 수입하는 때에는 동고시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6조(금지사항) 슈퍼그룹,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은 SBS제도에 의하여 수입한 쇠고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슈퍼그룹의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이 아닌 자에게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②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이 제21조의 용도제한에 위반하는 행위

③ 전문판매점 이외의 일반식육 판매점에 수입쇠고기(포장육 제외)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행위

④ 슈퍼그룹,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이 제22조에 의거 배정받은 물량을 최종수요자 또는 고객이 아닌 자가 수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제27조(사후관리)

① 슈퍼그룹은 SBS제도로 수입된 쇠고기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최종수요자 및 고객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수시로 하여야 한다.

② 육가공협회, 위생처리협회, 육가공조합의 최종수요자가 가공품과 포장을 가공할 때에는 자체 가공시설을 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가공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협회 및 조합과 협의하여 부정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슈퍼그룹은 SBS제도로 수입한 쇠고기에 관한 장부를 기록유지하고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단 사장은 SBS제도로 수입된 쇠고기의 부정유출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 결과를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보고)

① 슈퍼그룹은 월별 수입승인, 통관 및 판매실적을 익월 5일까지 사업단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슈퍼그룹은 최종수요자 및 고객의 용도외 사용, 부정유출 등 부정행위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즉시 사업단 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 시행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③ 수입쇠고기판매규정[축통51550-351(98.6.29)], 수입쇠고기 업계간자율거래제도(SBS)운영요령[축통51550-548(97.12.26)],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신고 및 운영요령[축통51550-202(97.5.15)], 수입쇠고기 매매참가인지정 및 공급요령[축통27454-27(91.1.15)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영업소	④ 상 호			
	⑤ 소재지			

수입쇠고기 취급요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군·구	처리기간	5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식육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근거법규	수입쇠고기 취급요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신고증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상 호			
영업장소재지			
수입쇠고기취급요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 시장, 군수, 구청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년 월 일	변경사항

〈별지 제3호 서식〉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 (휴업 · 폐업) 신고서						
신고인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영업소	④ 상 호		⑤ 신고번호 제 호		⑥ 신고일자	
	⑦ 소재지					
변경사항	⑧ 휴 업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 지				
	⑨ 폐 업	년 월 일				

수입쇠고기 취급요령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수입쇠고기 전문판매점(휴업 · 폐업) 신고안내			
제출하는곳	시 · 군 · 구	처리기간	2일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신고증		
근거법규	수입쇠고기 취급요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

<table>
<tr><td colspan="6">수입쇠고기 매미참가인 등록신고서</td></tr>
<tr><td>등록번호</td><td></td><td>상 호</td><td></td><td>대표자</td><td></td></tr>
<tr><td>주 소</td><td colspan="5"></td></tr>
<tr><td>등록도매시장</td><td colspan="2"></td><td>도매시장
미개설지역</td><td colspan="2">축협 도지회</td></tr>
<tr><td>거래보조금
(외상한도)</td><td colspan="2"></td><td>전화번호</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6">수입쇠고기 취급요령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매매 참가인 등록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주소:
성명: (인)</td></tr>
<tr><td colspan="6">(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3. 정관(법인에 한함)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 1부</td></tr>
</table>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